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64

발의연월일: 2020. 7. 1.

발 의 자: 박완주·문진석·신정훈

박영순 · 홍성국 · 문정복

윤재갑 · 김영배 · 양정숙

김승원 · 강준현 · 이성만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출산·고령화, 저성장·양극화,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.

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,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·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 회의를 설치하고자 함(안 제164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6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장제4절의 제목 "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"를 "국가자치분권회의 등"으로 한다.

제8장제4절에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4조의2(국가자치분권회의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 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	제4절 국가자치분권회의 등
협의체	
<u><신 설></u>	제164조의2(국가자치분권회의의
	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
	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
	방자치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
	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
	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
	<u> 둔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국가자치분권
	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
	<u>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</u>